

CMY	절차서	문서번호 : WS-QP - 508
	법규관리 및 준수평가	제정일자 : 2014.07.01 개정번호 : 2022.12.01(2) 페이지 : 1 / 11

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파악 및 적용여부 결정 절차
6.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평가 절차
7. 기록 및 보관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14.07.01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1	2022.12.01	③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④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CMY	절차서	문서번호 : WS-QP - 508
	법규관리 및 준수평가	제정일자 : 2014.07.01 개정번호 : 2022.12.01(2) 페이지 : 2 / 6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당사의 환경/안전보건경영 관련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파악, 적용여부 결정 및 준수평가에 대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는 당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당사의 환경/안전보건경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준수평가 절차를 기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법규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조례 등의 법령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의미한다.

3.2 그 밖의 요구사항

법규를 제외한 환경 관련 협약, 의정서, 단체의 환경, 안전보건원칙 등에 기술된 요구사항 및 당사가 준수하기로 동의한 사항을 의미한다.

예) 고객 요구사항, RoHS, WEEE, ELV, EuP, REACH 등

3.2 경영시스템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통칭하여 표현할 때 경영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팀장

- (1) 당사 운영과 관련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파악 및 적용여부 결정
- (2) 당사 운영과 관련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평가 실시
- (3) 상기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관련 자료의 해당부문과 의사소통 및 경영검토 입력자료로 제출

4.2 해당팀장

- (1) 해당될 경우,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경영시스템에 반영
- (2)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

5.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파악 및 적용여부 결정 절차

5.1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파악 대상 및 입수처 파악

- (1) 관리팀장은 다음 절차에 당사의 제품, 활동 및 서비스와 관련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파악 대상 및 관련 정보 입수처는 표 1과 같다.

CMY	절차서	문서번호 : WS-QP - 508
	법규관리 및 준수평가	제정일자 : 2014.07.01 개정번호 : 2022.12.01(2) 페이지 : 3 / 6

표 1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파악 대상 및 관련정보 입수처

구분		환경관련	안전보건 관련
파 악 대 상	법규	① 대기환경보전법 ② 악취방지법 ③ 소음진동관리법 ④ 물환경보전법 ⑤ 하수도법 ⑥ 토양환경보전법 ⑦ 폐기물관리법 ⑧ 화학물질관리법 ⑨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⑩ 그 밖의 환경 법규	① 산업안전보건법 ①-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①-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② 산업재해보상보호법 ③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④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⑥ 고압가스안전관리법 ⑦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⑧ 도시가스사업법 ⑨ 그 밖의 안전보건관련 법규
	그 밖의 요구 사항	① 친환경 제품과 관련된 고객 요구사항 ② 친환경 제품과 관련된 EU 환경기준 (RoHS, WEEE, EuP, REACH 등) ③ 환경과 관련된 그 밖의 요구사항	① 안전보건과 관련된 그 밖의 요구사항
정보 입수처	인터넷 관련 사이트, 관보		고객, 인터넷 관련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주1) 상기 법령 검색 사이트는 바뀔 수도 있으므로 최신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5.2 법규등록부 표지의 작성

상기 표 1의 법규 별로, 당사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고, 그 결과를 “표2 법규등록부(표지)”에 관련 내용을 기술한다.

표 2 법규등록부(표지)

상호명		○○○ 법규등록부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표준번호	법규 명칭	적용 여부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 번호	제.개정 사유			
법규-01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2014.3.11	-	0	ISO 14001 시스템 구축			

CMY	절차서	문서번호 : WS-QP - 508
	법규관리 및 준수평가	제정일자 : 2014.07.01 개정번호 : 2022.12.01(2) 페이지 : 4 / 6

5.3 관련법규의 최신여부 및 변경사항 파악

- (1) 상기 표 2에서 당사에 적용하기로 결정된 법규에 대하여 최소한 분기단위로 해당법규의 최신여부를 파악하여 아래 “표3 최신법규파악 LIST”를 작성한다.
- (2)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팀에 통보하거나, 관련 절차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표 3 최신 법규 파악 LIST

법규 명칭	적용 여부	법규 변경 모니터링 결과 (출처 : 법제처 인터넷 사이트)			법규적용 여부결정서 최종반영일	변경 내용
		법 른	시행령	시행규칙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2014.06.09	2014.06.28	2014.06.30	2014.06.28	
1) 법규 변경 모니터링 결과 난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최신 개정일자를 기술한다. 2) 법규 개정내용이 표4 (법규 별) 법규등록부 내용과 관련될 경우에는 상기의 “법규등록부 최종반영일”에 개정일자를 기술하고, 변경내용 난에 변경내역을 기술한다.						

5.4 상세 법규등록부의 작성

상기 표 3에서 당사에 적용하기로 결정된 법규 별로 다음 “표 4 (법규 별) 법규등록 부”를 작성한다.

- (1) 구분 난 작성
- (2) 적용법규 파악결과 기술
- (3)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기술

표 4 (법규 별) 법규등록부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공 사 현 황	관련 문서 / 기록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수탁자 처리능력 확인 (수집, 운반자, 처리자)	법17조 ① 3호 규칙17조	배출자는 수탁자가 수집, 운반, 처리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후 위탁처리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접수 상호 날인 - 수탁자의 인,허가 서류 및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서류접수	수탁자의 처리능력 확인 후, 계약/위탁 처리 의무화	-폐기물관리절차 등록, -폐기물처리업체 조사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방치폐기물이행보증서류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1) 구분 난에는 해당내용을 대별할 수 있는 용어를 기술(예 :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2) 항목 난에는 파악/결정해야 할 『핵심제목』을 기술 3) 조항 난에는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항번호』를 기술. 4) 규제내용 난에는 『핵심요구사항을 요약』하여 기술 5) 당사현황 난에는 『적용계획』을 기술 6) 관련문서/기록 난에는 『적용될 절차와 관련 기록』을 기술					

CMY	절차서	문서번호 : WS-QP - 508
	법규관리 및 준수평가	제정일자 : 2014.07.01 개정번호 : 2022.12.01(2) 페이지 : 5 / 6

5.5 법규등록부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공유 및 활용

- (1) 관리팀장은 법규등록부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팀에 출력하여 배포하거나, 당사내 전산 정보망을 활용하여 공유토록 한다.
- (2) 법규등록부는 다음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 (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안전위험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활용
 - (나) 경영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에 반영 지속적 개선 실시
 - (다) 해당직원에게 교육실시 및 운영절차에 반영
 - (라) 협력업체에 요구사항 전달, 교육실시
 - (마) 내부심사 기준에 반영 준수여부 확인
 - (사) 준수평가 시 활용 및 경영검토입력자료로 활용

5.6 최신정보의 유지

- (1) 관리팀장은 상기 표1과 관련된 법규에 대하여, 표1의 정보입수처의 모니터링을 통해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법규가 개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2) 관리팀장은 법규가 개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가) 『표 3 최신 법규 파악 LIST』에 최종 확인된 법규(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일자를 기술한다.
 - (나) 해당 시 법규등록부를 개정한다.

6.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평가 절차

6.1 법규와 관련된 준수평가의 실시

법규 준수평가는 다음 중 1개 이상의 방법을 조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 분	준수 평가 방법
일상점검	일상 점검표에 핵심 법규 준수항목을 반영하여 준수평가 실시
과태료기준	각 법규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기준을 활용하여 준수평가 실시 다만, 준수항목 중에서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 발췌/가공하여 평가 실시 - 아래 과태료의 부과기준: 예시 참조
내부심사	내부심사 점검표에 법규 준수항목을 반영하여, 준수평가 실시
[준수평가 시기]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회/반기 실시(안전보건) 2. 최소한 1회/년 이상 준수평가 실시(환경) 3. 법규의 중대한 변경 발생 시, 준수평가 실시	

CMY	절차서	문서번호 : WS-QP - 508
	법규관리 및 준수평가	제정일자 : 2014.07.01 개정번호 : 2022.12.01(2) 페이지 : 6 / 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예시

4.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300	400	500
마.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6.2 준수평가 결과의 활용

준수평가 결과는 다음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 (1) 필요 시 환경영향평가 또는 안전위험평가 재 실시
- (2) 경영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에 반영 지속적 개선 실시
- (3) 해당직원에게 교육 실시 및 운영절차에 반영
- (4) 미 준수 시 필요한 시정/예방조치의 실행
- (5) 경영검토입력자료로 활용

7. 기록 및 보관

양식번호	양 식 명	보존연한	작성부서
양식 508-1	최신법규 파악 LIST	최신본	관리팀
양식 508-2	법규등록부(표지, 상세)	최신본	관리팀
Free	법규준수여부 평가서	3년	관리팀
Free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평가서	3년	관리팀

최신법규 파악 LIST

[illegible]

- 1) 법규 변경 모니터링 결과 난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최신 개정일자를 기술한다.
- 2) 법규 개정내용이 법규적용여부결정서 내용과 관련될 경우에는 법규적용여부 결정서를 개정한다.

[illegible]

[illegible]